

행정법 공개특강

A · B · C 답안 비교 배부자료

— 같은 문제, 같은 결론, 왜 점수는 다른가 —

쟁점 :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신상공개 — 처분성·항고소송 대상성 (10점)

A 9점 · B 6점 · C 3.5점(과락선) — 압도적 점수의 공식 「1행2필」

압점3반 6개월 · 행정법(공법) 사례형 수강생 성과

표준점수 136.73 → 182.51

+45.78점 상승 · 2026년 변호사시험 표준점수

1행2필 · 조흥주

7월 19일(일) 오후 7:40 · 클리닉 모집 공개특강 자료

I. 문제

[사실관계]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 乙은 특정중대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 중인 피의자 甲에 대하여,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 甲의 얼굴·성명·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였다. 甲은 이 신상공개로 명예가 훼손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며 그 취소를 구하고자 한다.

[설문] 甲이 사법경찰관 乙의 신상공개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신상공개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검토하십시오. (10점)

※ 위 발문은 강의용 재구성본입니다. 실제 6월 모의고사 1번 원문 발문으로 교체하여 배부하십시오.

II. 정답해설 (모범답안)

I. 문제의 소재

사법경찰관의 신상공개가 행정소송법 제19조와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와 관련하여, 첫째 사법경찰관이 행정청인지 문제된다. 둘째 신상공개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문제된다. 셋째 신상공개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인지 문제된다.

II. 사법경찰관이 행정청인지 여부

판례에 의하면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의 행정청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청이 아니라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을 의미한다. 신상공개를 행한 사법경찰관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청은 아니나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이다. 사법경찰관은 행정청이다.

III. 신상공개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1. 판례 (행공특법권의기국권직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2. 사안의 경우

국민의 신체·재산에 대한 강제적인 물리력의 행사는 권력적 사실행위이다. 신상공개는 국민의 신체·재산에 대한 강제적인 물리력의 행사가 아닌 개인의 성명 등을 널리 알리는 것이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가 아니어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이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IV. 신상공개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인지 여부

1. 판례 (관행실법태)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

체적인 경우에 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②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③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④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사안의 경우

관련 법령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목적·취지, 신상공개결정의 주체·내용·형식·절차의 일방성, 신상공개와 피의자 甲이 입는 **수치심 자극과 명예훼손이라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취소소송의 제기가 분쟁의 조기해소에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법치행정의 원리상 신상공개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이다.

V. 설문의 해결

甲이 사법경찰관 乙의 신상공개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신상공개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Ⅲ. 채점 시스템 (6 단 체계)

1□ 목차별 배점

목차	항목	배점
I	문제의 소재	1점
Ⅱ	사법경찰관이 행정청인지 여부	2점
Ⅲ	신상공개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2점
Ⅳ	신상공개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인지 여부	4점
V	설문의 해결	1점
계		10점

2□ 채점자의 채점포인트

Ⅱ 사법경찰관이 행정청인지 (2점)

- 행정소송법 제 2 조 제 2 항 — 행정청은 형식적 의미가 아니라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
- 신상공개를 행한 사법경찰관 = 기능적(실질적) 의미의 행정청 → 사법경찰관은 행정청 (절대 누락 불가)

Ⅲ 신상공개가 처분인지 (2점)

- 처분 정의 판례 정식 문구(행공특법권의기국권직관)

- 강제적 물리력의 행사 = 권력적 사실행위 ↔ 신상공개 = 비권력적 사실행위 →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아님

IV 신상공개가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인지 (4점)

- 종합 고려 요소(관행실법태) 적시
- 사안포섭 — 목적·취지 / 일방성 / 수치심·명예훼손 불이익과의 실질적 관련성 / 분쟁 조기해소·법치행정 → 항고소송 대상

30 수험생 답안현출 체크리스트

- 사법경찰관이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임을 독립 목차(II)로 논증했는가 — 절대 누락 불가
- 처분 정의 판례 정식 문구(행공특법권의기국권직관)를 썼는가
- 강제적 물리력 행사(권력적 사실행위)와 대비하여 신상공개를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성질결정했는가
- 종합 고려 4 요소(관행실법태)를 적시했는가
- 4 요소를 '나열'에 그치지 않고, 수치심·명예훼손 불이익과의 실질적 관련성·법치행정까지 사안에 포섭했는가

40 항목별 세부배점

항목	세부내용	배점
I	문제의 소재(대전제·소전제추출)	1점
II	기능적(실질적) 의미의 행정청 논증(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2점
III	처분 정의 판례 + 권력적/비권력적 사실행위 대비 → 처분 아님	2점
IV	종합 고려 4요소(관행실법태) 판례	2점
IV	사안포섭 — 수치심·명예훼손 관련성·법치행정 → 대상	2점
V	설문의 해결(묻는 문제에 대한 해답)	1점

50 득점 키워드 & 매칭별 예상득점표

※ 채점 시 키워드 앞 □에 매칭된 항목을 ✓로 표시 (예상득점은 해당 묶음 매칭 기준)

목차	득점 키워드	매칭 시 예상득점
I	□대전제 □소전제추출	1점
II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 기능적(실질적) 의미의 행정청	2점

목차	특점 키워드	매칭 시 예상득점
	☐ 형식적 의미의 행정청 아님 ☐ 사법경찰관은 행정청이다 (결론)	
Ⅲ	☐ 처분 정의 판례(행공특법권의기국권직관) ☐ 강제적 물리력의 행사 = 권력적 사실행위 ☐ 신상공개 = 비권력적 사실행위 → 처분 아님	2점
IV	☐ 종합 고려 4요소 (관행실법태: 관련법령 / 주체·형식·절차 / 실질적 건련성 / 법치행정·태도)	2점
IV	☐ 목적·취지 + 일방성 ☐ 수치심 자극·명예훼손 불이익과의 실질적 건련성 ☐ 분쟁 조기해소(법치행정) → 항고소송 대상 (사안·결론)	2점
V	☐ 묻는 문제에 대한 해답	1점
총계		10점

6□ 전략적 시사점 & 출제의도

□ **절대 누락 불가** — Ⅱ에서 사법경찰관을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으로 세우는 논증(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을 독립 목차로 반드시 밝는다. 이 관문을 건너뛰면 처분·대상 논의 전체가 근거를 잃는다.

□ **고득점 분기점** — IV에서 종합 고려 4요소를 '나열'로 끝내지 않고, 수치심 자극·명예훼손이라는 중대한 불이익과의 실질적 건련성 및 분쟁 조기해소(법치행정)를 사안에 포섭해야 배점이 열린다.

□ **처분성** — Ⅲ에서 강제적 물리력의 행사(권력적 사실행위)와 대비하여 신상공개를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성질결정한다. 여기서 권력적으로 잘못 잡으면 IV 종합고려 논증이 무너진다.

출제의도 — 형식적 행정청이 아닌 사법경찰관의 신상공개에 대하여, ①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 논증 ② 전통적 처분개념(작위처분)에서의 처분성 부정 ③ 처분개념 확대(종합고려)에 의한 항고소송 대상성 인정의 3단 구조를 정확히 세우고 사안에 포섭하는 능력을 테스트한다.

IV. A · B · C 수험생 답안 전문

아래 세 답안은 같은 문제에 대한 실제 수준별 답안입니다. 자신의 답안이 어디에 가까운지 먼저 찾아 보십시오.

A 수험생 답안 (9점 · 정답답안에 근접, 포섭 밀도만 약간 흠)

I. 문제의 소재 사법경찰관이 행정청인지, 신상공개가 처분인지, 처분이 아니라면 취소소송

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인지 문제된다.

Ⅱ. 사법경찰관이 행정청인지 여부 사법경찰관은 형식적 행정청은 아니나, 신상공개라는 행정작용을 행하는 한도에서 기능적(실질적) 의미의 행정청에 해당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취지).

Ⅲ. 신상공개가 처분인지 여부

1. 판례 처분이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2. 사안의 경우 강제적인 물리력의 행사는 권력적 사실행위이나, 신상공개는 그러한 물리력의 행사가 아니므로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없어 처분이 아니다.

Ⅳ. 신상공개가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인지 여부

1. 판례 항고소송 대상 여부는 ① 관련 법령의 내용·취지, ②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③ 상대방 등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④ 법치행정의 원리와 행정청·이해관계인의 태도를 종합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2. 사안의 경우 신상정보 공개법의 목적·취지, 신상공개는 일방성, 수치심 자극과 명예훼손이라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이 인정되므로 신상공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이다.

V. 설문의 해결 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신상공개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B 수험생 답안 (6점 · 목차 허술 · 행정청 논증 및 포섭 부실)

I. 문제의 소재 신상공개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다. 처분인지, 아니면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본다.

Ⅱ. 처분인지 여부 사법경찰관도 행정청이므로, 그 신상공개가 처분인지 본다. 신상공개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없으므로 처분이 아니다.

Ⅲ.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판례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불이익, 법치행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한다. 신상공개는 그 법에 근거한 것으로, 목적과 형식에 비추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Ⅳ. 결론 따라서 신상공개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사법경찰관이 왜 행정청인지(기능적 의미의 행정청)를 논증하지 않고 전제로만 처리 · 1.판례/2.사안 구분 없이 뭉뚱 · IV 4요소 나열만, 수치심·명예훼손 견련성 포섭 없음)

C 수험생 답안 (3.5점 · 과락선 · 답안 구성·법리 부재)

신상공개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甲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하는 것인데, 이는 개인에게 큰 피해를 주는 일로 보인다. 이것이 처분에 해당하는지 보면, 신상공개가 직접 어떤 권리를 뺏거나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렇지만 국가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甲에게 큰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므로, 甲은 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신상공개를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법경찰관 = 기능적 행정청 논증, 권력적/비권력적 사실행위 개념, 종합 고려 4요소가 모두 없이 직관적 결론으로 마무리)

V. A · B · C 매칭점수표

※ ✓매칭 ● 부분매칭 ✕미매칭 — 같은 결론이라도 매칭된 키워드 묶음에서 점수가 갈립니다.

목차	특점 키워드 (묶음)	배점	A (9)	B (6)	C (3.5)
I	□대전제 / □소전제추출	1	✓1	✓1	● 1
II	□사법경찰관 = 기능적(실질적) 의미의 행정청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취지)	2	✓2	● 1	✕0
III	□처분 정의(행공특법...) / □강제적 물리력 = 권력적 사실행위 / □신상공개 = 비권력적 사실행위 → 처분 아님	2	✓2	✓2	● 1.5
IV	□종합 고려 4요소 (관행실법태) — 판례	2	✓2	● 1	✕0
IV	□[2필·포승줄] 수치심 자극·명예훼손 불이익과의 실질적 관련성 + □법치행정 → 대상 (사안)	2	● 1	✕0	✕0
V	□묻는 문제에 대한 해답	1	✓1	✓1	● 1
합계		10	9	6	3.5

▶ 세 답안의 결론은 같습니다(신상공개 = 취소소송 대상). 점수는 노란 두 칸에서 갈립니다 — 「1행」 사법경찰관 = 기능적 행정청 논증과 「2필」 포승줄(사안포섭: 수치심·명예훼손 관련성·법치행정). B는 행정청임을 전제로만 처리하고 포승줄을 놓쳐 6점, C는 구조 부재로 3.5점(과락선)입니다.

VI. A · B · C 답안피드백

A 수험생 (9점)

5단 목차(I ~ V)를 정답답안대로 완비했습니다. 특히 II에서 사법경찰관을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으로 논증하고, III에서 권력적/비권력적 사실행위를 대비하여 처분성을 부정한 흐름이 정확합니다. 유일한 흠은 IV.2에서 관련성은 짚었으나 '분쟁의 조기해소에 유효·적절(법치행정)' 논거를 짧게 처리해 1점 아쉬운 점입니다(처분 정의 판례도 정식 문구 '행공특법권의기국권직관'을 온전히 옮기면 더 안정적).

B 수험생 (6점)

방향과 결론은 맞지만 목차부터 허술합니다. 이 문제에서 절대 누락하면 안 되는 「사법경찰관 =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을 독립 목차로 논증하지 않고 '사법경찰관도 행정청이므로'라고 전제로만 처리했고, 1.판례 / 2.사안의 구분 없이 뭉뚱그렸으며, IV에서 종합 고려 4요소를 '나열'만 하고 수치심·명예훼손 불이익과의 실질적 관련성·법치행정을 포섭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이 A와 같아도 이 두 지점(Ⅱ·Ⅳ)에서 걸립니다.

C 수험생 (3.5점 · 과락선)

5단 목차도, 기능적 행정청·권력적/비권력적 사실행위·종합 고려 4요소 같은 법리 언어도 거의 없이 직관적 결론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처분 해당 여부를 어렵듯이 건드린 덕에 부분점수로 3.5점 — 정확히 과락선에 걸쳐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Ⅱ(기능적 행정청)나 IV(종합 고려) 중 하나만 제대로 세워도 즉시 과락을 벗어납니다. 먼저 훈련할 것은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답안의 뼈대(목차·삼단논법)를 세우는 법'입니다.

총평 — 결론이 아니라 포승줄이 있느냐가 점수획득요소다

세 답안의 결론은 사실상 같습니다(신상공개 = 취소소송 대상). 그런데 점수는 **9 · 6 · 3.5**로 갈립니다. 갈림길은 둘 — ① 사법경찰관을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으로 세웠는가, ② 종합 고려 4요소를 수치심·명예훼손 불이익에 포승줄로 묶었는가입니다. 답안특강은 이를 **C(3.5, 과락) → 구성 훈련 → 6 → 대면 정밀 첨삭 및 상담 → 9**의 사다리로 끌어올립니다.

Ⅶ. 조문 발췌본

조문	내용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분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이 포함된다. → 사법경찰관을 기능적(실질적) 의미의 행정청으로 포섭하는 근거.
행정소송법 제19조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법 제4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고(제1항), 결정 시 범죄의 중대성·범행 후 정황·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문	내용
	야 한다(제2항). → 신상공개의 근거법.

※ 항고소송 대상 판단의 종합 고려 요소(관행실법태)는 조문이 아니라 판례 법리입니다. 답안에서는 "판례에 의하면"으로 인용합니다.

Ⅷ. 압점 반별 서비스 비교

제공 항목	압점1반 (오프)	압점2반 (온라인)	압점3반 (오프)
회당 비용	7만원	10만원	12만원
수강 방식	대면	비대면(전송)	대면
문제	✓	✓ 전송	✓
정답해설 (자료+강의)	✓ 대면강의	✓ 온라인강의	✓ 대면강의
채점포인트·체크리스트	✓	✓ 전송	✓
매칭점수표	—	✓ 전송	✓
답안 첨삭·피드백	개략 첨삭 + 방향성 총평	답안피드백 전송	대면 정밀 첨삭상담

압점1반 — 방향을 잡아주는 반.

압점2반 — 자료는 다 받되 스스로 소화하는 반.

압점3반 — 점수를 끌어올리는 반.

포승줄 18회 · 행정법 채점 매칭표 [○○○ 수험생]

해설채점표(정답 기준) 대비 학생 답안 매칭 · 매칭 ○ 충족 △ 흔적·불완전 ✕누락·오배치 · 예상득점 = 배점 × 획득계수

해설채점표 — 득점 키워드 / 논증 마디	배점	매칭	획득계수	예상득점	학생 답안 대조 / 비고
제1문 설문4 명단공표 대상적격 (10점)					
I 문제의 소재 (대전제·소전제추출)	2	△	0.6	1.2	소재 제시하나 명단공표를 '권력적 사실 행위'로 성질결정(방향 오류)
II 처분 정의 판례 정식 —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	2	○	1	2	판례 정식 문구 정확히 적시
II 사안 — 비권력적 사실행위 →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아님	1	✕	0	0	정반대로 '권력적 사실행위 → 처분'으로 감 = 핵심 오류(같은 논증구조 반복)
III 항고소송 대상 종합고려 요소(관련 법령 취지 / 주체·내용·형식·절차 / 실질적 관련성 / 법치행정·태도)	2	✕	0	0	종합고려 요소 전무 — 처분성(좁은 의미) 부정 → 종합고려로 대상 인정 2단 논증 자체가 없음
III 사안포섭 — 목적·취지 / 일방성 / 명예훼손·수치심 관련성 / 분쟁 조기해소 → 항고소송 대상(사안·결론)	2	△	0.15	0.3	명예훼손·수치심 불이익은 언급하나 관련성 프레임·일방성·분쟁조기해소·법치행정 없음
IV 설문의 해결 (문는 문제에 대한 해답)	1	○	1	1	대상 해당 결론 도달(결론은 정답과 일치, 경로가 빔)
↳ 소계	10			4.5	예상득점 / 만점
제2문 설문1 거부처분 대상적격 (15점)					
I 문제의 소재 (대전제·소전제추출)	1	△	0.7	0.7	첫째 폐지 처분인지 / 둘째 거부 처분인지로 소재 제시
II 처분성·신청권 2가지 쟁점 도출	1	△	0.6	0.6	쟁점 도출하나 신청권을 독립 쟁점으로 명확히 세우지 못함
II 처분 정의 판례 정식 —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	2	△	0.5	1	행정계획 판례(구속적이면 처분)로 대체, 일반 처분 정식 적시는 약함
II 사안 — 도시계획시설결정=행정계획(구속적)+의무부담(형질변경·건축금지) → 처분	2	○	1	2	구속적 계획·재산권 제한 논거 정확 포섭
II 신청권 판례 — 신청인 불문·관계법규 해석상 추상적 결정	2	△	0.4	0.8	거부처분 성립 3요건으로 대체, 신청권 판례 정식은 약함
II 사안 — 원칙(계획변경청구권 부정) + 입안제안·통보의무·헌법§23③ → 甲 신청권	4	△	0.65	2.6	입안제안(§26)·통보의무·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취지 ○, 그러나 '원칙: 계획변경 청구권 부정' 누락

해설채점표 — 득점 키워드 / 논증 마디	배점	매칭	획득계수	예상득점	학생 답안 대조 / 비고
II 소결 — 신청권 있는 처분에 대한 거부 = 법적 상태 변동 → 거부처분	2	○	0.85	1.7	판례로 거부=법적상태 변동→거부처분 연결
III 설문의 해결	1	○	1	1	거부처분 해당 결론
↳ 소계	15			10.4	예상득점 / 만점

제2문 설문2 하자승계 (20점)

I 문제의 소재 (대전제·소전제추출)	3	○	0.85	2.55	전제상황 / 선행 취소사유 / 승계 여부 3단 소재 제시
II 전제요건 — 선·후행 모두 처분 / 선행 취소사유·불가쟁력 / 후행 적법	2	○	1	2	전제요건 정확히 적시
II 사업시행자 지정=권한 설정→처분 / 실시계획인가=허가·수용권 설정→처분 / 선행 불가쟁력	2	○	0.9	1.8	지정·인가 모두 처분(강학상 특허)·불가쟁력 포섭(수용권 언급은 약)
II 서류 일부 누락 = 절차상 하자(취소사유) / 후행 취소소송 적법 → 전제 충족	2	○	0.85	1.7	서류 누락=절차상 하자=취소사유 정확
III 결합 1효과→승계 / 독립 별개→불승계 (판례)	2	○	1	2	판례 법리 정확 적시
III 예측불가능·수인불가능 시 예외적 주장 가능 (판례 예외)	2	○	1	2	예외 법리 정확 적시
III 지정·인가 = 독립 별개 효과 → 하자 불승계 (사안)	2	○	0.9	1.8	별개 독립 효과→불승계 포섭
III 실시계획인가 예측가능 / 수인가능 → 예외 부정 / 선행 하자 주장 불가 (사안·결론)	3	○	0.85	2.55	예측가능·수인가능성 없는 경우 아님→예외 부정 포섭
IV 설문의 해결	2	○	1	2	주장 부당 결론 — 전반적으로 완결도 높은 답안
↳ 소계	20			18.4	예상득점 / 만점

제2문 설문3 계획재량·형량하자·신뢰보호 (25점)

I 문제의 소재 (대전제·소전제추출)	3	○	0.8	2.4	계획재량 남용 / 신뢰보호 위반 2쟁점 소재 제시
II 계획재량 독자성 — 부정설/긍정설/판례(형량명령·형량하자 독자성 인정)	2	✗	0	0	II 항목을 제목만 두고 통째로 비움
II 가변성·형성자유·규범구조 → 긍정설·판례 / 폐지=계획재량 (검토·소결)	2	✗	0	0	비움 — 계획재량 성질결정 부재

해설채점표 — 특점 키워드 / 논증 마디	배점	매칭	획득계수	예상득점	학생 답안 대조 / 비고
Ⅲ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 / 공익·사의 정당한 비교교량 (형량 제한)	2	✗	0	0	형량하자 논의 전무(신뢰보호로 직행)
Ⅲ 형량하자 3유형 — 형량해태·형량흔 결·오형량 → 위법 (판례)	3	✗	0	0	형량하자 3유형 전무 — 최대 배점 공동
Ⅲ 폐지에도 형량하자법리 동일 적용 / 4개월 10여 차례 협의→형량하자 없음 (사안)	3	✗	0	0	형량하자 사안포섭 전무
IV 신뢰보호 4요건 — 공적 견해표명 / 귀책 없음 / 신뢰행위 / 견해 반하는 처분 이익침해	3	○	1	3	신뢰보호 4요건 정확 적시
IV 공익·제3자 이익 현저 침해 없을 것 (한계)	2	○	0.85	1.7	공익·제3자 이익 한계 언급
IV 고시만으론 공적 견해표명 아님 / 존속 기대이익<계획변경 공익 → 보호 가치 신뢰 없음 → 위반 아님 (사안·결 론)	4	△	0.45	1.8	결론(위반 아님)은 정답, 그러나 '공적 견해표명 부정(고시만으론 아님)' 대신 귀책사유+비교형량으로 처리
V 설문의 해결	1	○	1	1	A 주장 부당 결론
↳ 소계	25			9.9	예상득점 / 만점
제2문 설문4 조례안 감독수단 (20점)					
I 문제의 소재 (대전제·소전제추출)	2	△	0.7	1.4	조례 위법 / 재의요구·제소 가능 2쟁점 소재(조례 위법은 배점 밖 전제)
II 재의요구지시 — 요건(법령위반·공 익 현저침해)+주체(주무부장관)+단체 장 20일 내 재의요구 (제192①)	4	○	0.95	3.8	제192① 요건·주체·20일 재의요구 정확 적시
II 효과 — 재의결 확정(재적 과반·출 석 2/3, 제192③) + 단체장 제소·집행 정지(제192④)	4	✗	0.1	0.4	재의결 정족수·확정(③), 단체장 제소·집 행정지(④) 누락
III 제소지시·직접제소 (제192⑤)	3	○	0.9	2.7	제192⑤ 제소지시·직접제소·집행정지 적시
III 직접제소 절차(제192⑥⑦, 7일 단 위) + 재의요구 불응 시 직접제소(제 192⑧)	5	✗	0.1	0.5	7일 단위 절차(⑥⑦)·재의요구 불응 직 접제소(⑧) 누락 = 최대 배점 공동
IV 설문의 해결	2	○	0.85	1.7	국토부장관 재의요구·제소지시·직접제 소·집행정지 결론(주체 표기 소략)
↳ 소계	20			10.5	예상득점 / 만점

해설채점표 — 득점 키워드 / 논증 마디	배점	매칭	획득계수	예상득점	학생 답안 대조 / 비교
행정법 합계 (5개 설문)	90			53.7	≈ 54 / 90

채점 요약

- **반복된 실점** — 설문 4(명단공표)에서 앞 회차와 동일한 '권력적 사실행위 논증구조' 오류. 비권력적으로 성질결정(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부정) 후 종합고려 요소로 항고소송 대상을 인정하는 2 단 논증을 세워야 하나, 권력적으로 곧장 처분 인정 → 종합고려 배점 상실.
- **최대 공동** — 설문 3 에서 계획재량 독자성·형량하자 3 유형을 통째로 비움(제목만) → 약 13 점분 미현출. 신뢰보호만 서술.
- **강점** — 설문 2(하자승계)는 전제요건 → 결합/독립 → 예측·수인 예외의 단계 구조를 완결도 높게 포섭(약 18/20).

2021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공법(행정법) 답안피드백

포승줄 18회 — 오답에서 정답 논증으로 [○○○ 수험생 답안 분석]

교안의 설계 의도

완성된 모범답안을 앞에서부터 나열하지 않는다. 실제 수험생 답안이 밟은 흔한 오답 경로를 먼저 드러내고, 그것이 왜 배점을 놓치는지를 짚은 뒤 정답 논증을 세우는 3단 구성(오답 → 교정 → 정답)을 취한다.

변시 사례형에서 실점은 "쟁점을 몰라서"가 아니라 "결론적 개념을 먼저 소개해버려서 뒤이은 논증 구조가 논증적으로 무의미하게 되어버려서" 발생한다. 정답만 외우면 같은 함정에 다시 빠진다.

이 답안을 관통하는 두 개의 실점 유형

유형	정체	해당 설문
논증구조 오류	성질결정을 반대로 잡아 정답으로 이르는 논증구조 자체가 세워지지 않음	설문4 명단공표 (반복!)
논점 공동(空洞)	발문이 요구한 논점을 제목만 남기고 통째로 비움	설문3 계획재량·형량하자

특히 명단공표의 "권력적 사실행위" 오류는 앞 회차에서도 나온 **반복 실점**이다. 이 교안은 그 지점을 뿌리부터 교정하는 데 초점을 둔다.

제1문 설문 4 — 명단공표의 대상적격 (10점)

발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주식회사 甲의 청년고용의무 불이행을 확인하고, 긴급재정경제명령 제 10조에 근거하여 甲의 범위반사실 및 대표자 丁의 인적 사항을 공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丁이 공표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공표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하시오.

① **오답** "권력적 사실행위"로 법적 성질의 결론적 개념을 제시하고 곧장 처분임을 인정 전형적 오답(그리고 이 답안이 실제로 밟은 경로)은 이렇다. 명단공표의 성질을 권력적 사실행위로 못박고(병무청장 병역기피자 명단공표 판례 인용), 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쳐 곧바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결론짓는다.

이 논증구조의 문제는 두 차원이다.

- **첫째, 성질결정이 부정확하다.** 명단공표는 상대방에게 실력을 행사해 수인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사실과 인적 사항을 공중에 널리 알리는 데 그친다. 명예훼손·수치심이라는 불이익은 사회적·간접적 압력이지 법적 수인의무의 강제가 아니다. 분류상 비권력적 사실행위(공표)다.

- **둘째, 이 성급한 개념적 결론이 배점의 절반(Ⅲ 4 점)을 소거한다.** "권력적 → 당연히 처분"으로 가면, 이 문제가 실제로 요구하는 종합고려 요소에 의한 항고소송 대상성 인정 논증을 펼칠 자리가 사라진다.

지문이 오답을 반증한다. 참조조문 제10조는 공표에 앞서 위원회 심의 → 잠정 대상자 통지 → 소명 기회 부여 → 6개월 후 재심의 → 공표 대상자 결정이라는 정교한 절차를 두고 있다. 이는 즉각적 실행(권력적 사실행위)의 모습이 아니라, 신중한 행정결정으로서의 공표다. 이 절차규정은 오히려 아래 ③의 "주체·내용·형식·절차" 종합고려 논거를 뒷받침한다.

② 교정 처분성(전통적 이분법에서의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작위처분) 부정 → 처분 개념의 확대에 의한 대상 인정

이 문제의 핵심은 2단 논증이다.

- **Ⅱ** 실체법상 처분 개념으로는, 명단공표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여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없으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먼저 부정**).
- **Ⅲ** 실체법상 처분개념을 근거로 하되, 그 개념을 실질적 견련성 있는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행정작용에까지 확대하여, 판례의 종합고려 요소에 비추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임을 인정한다 (**다시 긍정**).

성질을 권력적으로 잡아 곧장 처분을 인정하면 이 2단 구조가 무너진다.

③ 정답 논증 종합고려 요소로 대상성 인정

판례의 종합고려 formula.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는 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②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③ 그 행위와 그 행위의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④ 법치행정의 원리, ⑤ 그 행위를 행한 행정청과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사안 포섭(종합고려 요소 일대일 대응).

- ① 관련 법령(긴급재정경제명령)의 목적·취지 — 청년고용 촉진, 의무이행 확보
- ② 그 공표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적 측면의 일방성
- ③ 그 공표행위와 이해관계인인 丁의 명예훼손·수치심 자극이라는 중대한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 ④ 취소소송의 제기가 분쟁의 조기해소에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는 측면에서의 법치행정의 원리상 요청

→ 종합하면 명단공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에 해당한다.

▣ 정답 목차

I. 문제의 소재

Ⅱ.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판례(처분 정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 → 명단공표 = 비권력적 사실행위 → 처분 아님

Ⅲ.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인지

판례(종합고려 요소) → 목적·취지 / 일방성 / 불이익과의 실질적 관련성 / 분쟁 조기해소 → 대상

IV. 설문의 해결

△ 함정노트

명단공표를 "권력적 사실행위"로 성질결정하는 순간, ① 처분성(전통적 이분법에서의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작위처분) 부정 → ② 종합고려로 항고소송 대상 인정의 2단 논증이 무너지고 Ⅲ 4점이 통째로 사라진다. 비권력적 사실행위라도 종합고려상 대상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문제의 변별 포인트다. 결론(대상 인정)이 같아도 경로가 반대면 배점은 못 받는다.

제2문 설문 1 — 거부처분 대상적격 (15점)

발문 甲의 도시계획시설결정 폐지신청에 대한 乙 광역시장의 2017. 12. 5.자 거부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시오.

① 오답 신청권의 원칙·예외 구조를 절반만 세움

이 답안은 처분성(도시계획시설결정 = 구속적 행정계획)은 잘 포섭했으나, 신청권 논증에서 원칙(계획변경청구권 부정)을 빠뜨리고 곧장 예외 근거(입안제안규정·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취지)만 나열했다. 결론은 맞지만 원칙·예외의 2단 구조가 반쪽이다.

② 교정 거부처분 3요건 + 신청권 원칙·예외

거부처분 대상적격은 ① 그 신청한 행위가 처분일 것, ②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적 상태에 어떤 변동을 초래할 것, ③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을 것의 3요건이다. 승부처는 신청권이고, 행정계획에서는 원칙·예외 구조가 핵심이다.

③ 정답 논증

Ⅱ 처분성. 도시계획시설결정 = 행정계획(구속적 계획). 형질변경·건축이 제한되는 의무 부담이 발생하므로 처분이다.

Ⅱ 신청권.

- **판례:**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지 고려하지 않고 관계법규의 해석상 국민에게 신청권이 있는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된다.
- **원칙:** 장기성·종합성을 갖는 행정계획에서는 계획변경(폐지)청구권이 원칙적으로 부정된다.
- **예외:** 그러나 ① 입안제안규정(국토계획법 §26①) ② 입안처리결과 통보의무(§26②) ③ 헌법 §23③ 재산권보장의 취지를 근거로, 토지소유자 甲에게는 예외적으로 신청권이 인정된다.

소결. 그 신청한 행위가 처분이고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

는 경우, 그 거부행위는 신청인의 법적 상태에 어떤 변동을 초래한다고 간주되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다.

▣ 정답 목차

I. 문제의 소재 (처분성 · 신청권 2쟁점 도출)

II. 거부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인지

처분성: 도시계획시설결정 = 구속적 행정계획 → 처분

신청권: 판례(추상적·관계법규 해석) / 원칙(계획변경청구권 부정) + 예외(입안제안·통보의무·헌법상 재산권보장) → 甲 신청권

소결: 신청권 있는 거부 = 법적 상태 변동 → 거부처분

III. 설문의 해결

△ 함정노트

행정계획의 계획변경·폐지 신청권은 원칙적으로 부정되나 입안제안규정·통보의무·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취지를 근거로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원칙 부정"을 생략하고 예외만 쓰면 원칙·예외 2단 포섭의 배점을 놓친다.

제2문 설문 2 — 하자승계 (20점)

발문 甲은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이 위법하므로 실시계획인가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甲의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의 제소기간은 도과하였다)

① 오답 이 답안은 오답이 아니다 (모범 사례)

이 설문은 학생이 가장 완결도 높게 쓴 답안이다. 전제요건 → 결합/독립 → 예측·수인 예외의 단계 구조를 정확히 밟았다. 여기서는 정답 구조를 확인하고, 미세한 보강점만 짚는다.

② 정답 논증 3단계 구조

II 하자승계의 전제요건. ① 선·후행 모두 처분 ② 선행에 불가쟁력 + 선행 하자가 취소사유 ③ 후행 소제기 적법.

-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권한을 설정하는 처분(강학상 특허).
- 실시계획인가 = 공사 시행·수용권을 설정하는 처분.
- 서류 일부 누락 = 절차상 하자(취소사유) → 중대·명백하지 않아 무효 아님.
- 선행 제소기간 도과 → 불가쟁력 발생. 전제요건 충족.

III 하자의 승계 여부.

- 판례: 선·후행이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면 승계,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발생시키면 불승계.

- **예외:** 그럼에도 예측불가능·수인불가능하면 예외적으로 후행을 다투며 선행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
- **사안:**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한다 → 원칙상 불승계. 지정을 받은 자가 인가를 받는 구조여서 예측가능하고 다툴 수 있었으므로 수인가능 → 예외도 부정.

결론. 하자가 승계되지 않으므로 甲은 지정처분의 위법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다툴 수 없다.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보강점

실시계획인가의 처분성을 논할 때 "수용권 설정"까지 명시하면 더 완결적이다. 전반적으로 이 답안은 이 회차 학생 실력의 상한을 보여준다.

제2문 설문 3 — 계획재량·형량하자·신뢰보호 (25점)

발문 A 주식회사는 도시관리계획이 폐지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이 과소평가되었고, 도시관리계획 폐지로 지출한 막대한 비용이 무위로 돌아갔으며, 도시관리계획폐지가 자신의 신뢰이익을 반영하지 않고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A 주식회사의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① 오답 발문의 절반(계획재량·형량하자)을 통째로 비우는 논리누락 발생

이 답안의 가장 큰 실점이다. 발문에서 A의 주장은 두 부분이다.

- "자신의 이익이 과소평가되었고" → 형량하자(오형량)·계획재량 남용
- "신뢰이익을 반영하지 않고" → 신뢰보호원칙 위반

그런데 학생은 Ⅱ(계획재량 남용 여부)를 제목만 남기고 비웠고, Ⅲ에서 형량하자를 다루지 않고 곧장 신뢰보호로 넘어갔다. 발문이 정면으로 요구한 형량하자 논점(약 13점분)이 통째로 공동이다. "이익이 과소평가"라는 문구는 오형량을 정확히 반영하는 정황이다.

② 교정 두 부분의 논리 누락을 제거한다

A의 주장은 형량하자와 신뢰보호 두 축이므로, 답안도 두 축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 하나라도 비우면 발문 배점의 절반을 잃는다.

③ 정답 논증

Ⅱ 법적 성질 — 계획재량.

- **학설:** 독자성 부정설(형량명령 = 비례원칙) / 독자성 긍정설(규범구조·하자이론 차이).
- **판례·검토:** 가변성·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규범구조 차이 → 독자성 긍정.
도시관리계획폐지 = 계획재량행위(행정소송법 제 27 조에 의해 통제).

Ⅲ 계획재량의 남용(형량하자) 여부.

- 계획재량에도 형량명령의 한계: 관련 공익·사익을 정당하게 비교교량해야 한다.

- **형량하자 3 유형:** 형량해태(전혀 안 함) / 형량흠결(누락) / 오형량(정당성·객관성 결여) → 위법.
- 형량하자법리는 계획 「폐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사안:** 광역시장이 A 임직원과 4 개월간 10 여 차례 협의·면담을 실시하였는바, 협의와 면담은 서로의 이익을 확인하고 그 이익을 조절해가는 과정임에 분명하므로 이익형량을 게을리하거나 누락하거나 오형량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형량하자 없음 → 계획재량 남용 없음.

IV 신뢰보호원칙(행정기본법 §12①) 위반 여부.

- **4 요건:** ① 공적 견해표명 ② 귀책사유 없음 ③ 신뢰에 따른 행위 ④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으로 이익 침해.
- **한계:** 공익 또는 제 3 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을 것.
- **사안:** 도시관리계획 고시만으로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공적 견해표명은 특정 처분에 대한 질의에 대한 응답을 말하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계획은 장기성·가변성이 있어 변경 가능성이 내재하므로 존속에 대한 기대이익이 거의 없고, 그 기대이익보다 계획변경(자연자원·생태계 보호)의 공익이 크다 → 보호가치 있는 신뢰 부정 → 신뢰보호원칙 위반 아님.

결론. 형량하자도 없고 신뢰보호원칙 위반도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폐지가 위법하다는 A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정답 목차

- I. 문제의 소재 (계획재량 남용 · 신뢰보호 위반 2쟁점)
- II. 법적 성질 — 계획재량 (독자성 긍정설·판례)
- III. 계획재량의 남용(형량하자) 여부
형량하자 3유형(해태·흠결·오형량) → 폐지에도 동일 적용 / 4개월 10여 차례 협의·면담 → 형량하자 없음
- IV.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4요건 + 한계 / 고시만으로는 공적 견해표명 아님 / 존속 기대이익 < 계획변경 공익 → 위반 아님
- V. 설문의 해결

△ 함정노트

"이익이 과소평가"(형량하자)와 "신뢰이익"(신뢰보호)은 발문이 던진 두 개의 독립 논점이다. 신뢰보호만 쓰고 계획재량·형량하자를 비우면 절반의 배점을 잃는다. 형량하자는 3유형을 적시한 뒤 "폐지에도 동일 적용"을 명시하고, 신뢰보호는 "고시만으로는 공적 견해표명 아님"이 결론의 핵심이다.

제2문 설문 4 — 조례안 의결에 대한 감독수단 (20점)

발문 국토교통부장관은 「乙 광역시 B산 보호조례」(안)이 법률의 위임 없이 토지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위법하다는 의견이다. 乙 광역시의회가 해당 조례안을 의결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활용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상 감독수단들을 검토하시오.

① 오답 재의요구는 세웠으나 재의결 효과·직접제소 절차를 비움

이 답안은 재의요구지시(제192①)와 제소지시(제192⑤)는 적시했으나, 재의결의 효과(정족수·확정, 단체장의 제소·집행정지)와 직접제소의 절차(7일 단위 기간, 재의요구 불응 시 직접제소)를 비웠다. 제192조의 조문 흐름이 중간에 끊긴다.

② 교정 제192조의 단계별 감독수단을 빠짐없이

이 문제는 조문 나열의 정확성·완결성이 배점이다. 재의요구 → 재의결 효과 → 제소지시·직접제소 → 절차기간까지 단계별로 빠짐없이 서술해야 한다.

③ 정답 논증

Ⅱ 재의요구지시 (제192①).

- **요건:**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 위반·공익 현저 침해.
- **주체·절차:** 시·도는 주무부장관이 단체장에게 재의요구를 지시 → 단체장은 이송받은 날부터 20 일 이내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에 재의요구.
- **효과 ①(제 192③):**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확정.
- **효과 ②(제 192④):** 단체장은 재의결 사항이 법령 위반이면 재의결된 날부터 20 일 이내 대법원 제소 + 집행정지 신청.

Ⅲ 제소지시·직접제소 (제192⑤ 이하).

- **제 192⑤:** 단체장이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무부장관이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 신청.
- **제 192⑥·⑦:** 제소지시는 재의결 후 20 일이 지난 날부터 7 일 이내, 단체장은 지시받은 날부터 7 일 이내 제소, 장관은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7 일 이내 직접 제소.
- **제 192⑧:** 단체장이 재의요구 지시에 불응(또는 지시 전 조례안 공포)하면 장관은 이송 후 20 일이 지난 날부터 7 일 이내 대법원에 직접 제소·집행정지 신청.

결론. 국토교통부장관은 乙 광역시장에게 재의요구 지시, 재의결된 조례에 대한 제소지시,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 신청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정답 목차

I. 문제의 소재

Ⅱ. 재의요구지시 (제192①) — 요건·주체·20일 재의요구
+ 효과: 재의결 확정(③) + 단체장 제소·집행정지(④)

Ⅲ. 제소지시·직접제소 (제192⑤ 이하)

+ 직접제소 절차(⑥⑦, 7일 단위) + 재의요구 불응 직접제소(⑧)

IV. 설문의 해결

△ 함정노트

이 문제는 제192조의 단계별 조문을 빠짐없이 적시하는 것이 배점이다. 재의요구(①)만 쓰고 재의결 효과(③④)와 직접제소 절차·기간(⑤⑥⑦⑧)을 비우면 절반 이상을 잃는다. 특히 7일 단위 기간과 재의요구 불응 시 직접제소(⑧)가 고배점 포인트다.

종합 — 이 답안이 주는 교훈

반복되는 실점 하나, 놓친 논점 하나

설문	학생이 앞세운 논증구조 / 비운 논점	결과
설문4 명단공표	"권력적 사실행위" → 곧장 처분 (앞 회차 반복!)	종합고려 4점 상실
설문1 거부처분	신청권 "원칙(부정)" 생략, 예외만	원칙·예외 배점 일부
설문2 하자승계 (모범)	단계 구조 완결	강점
설문3 계획재량	계획재량·형량하자를 제목만 남기고 비움	약 13점 공동
설문4 조례감독	재의결 효과·직접제소 절차 비움	조문 배점 상실

답안작성 원칙 세 가지

- 성질결정(논증구조)을 반대로 잡지 말라.** 명단공표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다. 권력적으로 잡으면 "처분성(전통적 이분법에서의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작위처분) 부정 → 종합고려로 항고소송 대상 인정"의 2 단 논증이 무너진다. 이 오류가 두 회차 연속 반복되었다 — 가장 먼저 교정해야 할 지점.
- 발문이 던진 논점을 비우지 말라.** 설문 3 의 "이익 과소평가"는 형량하자를, "신뢰이익"은 신뢰보호를 부른다. 두 갈래 중 하나를 비우면 배점의 절반을 잃는다.
- 조문형 문제는 단계별로 완결하라.** 감독수단 문제는 제 192 조의 재의요구 → 재의결 효과 → 제소지시·직접제소 → 절차기간을 빠짐없이 적시하는 것이 곧 배점이다.

본 교안은 실제 수험생 답안(익명)의 검토 과정을 재구성한 것이다. 정답 논증은 해설채점표(득점키워드·배점)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실제 채점표가 다른 논거로 구성된 경우 그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다.

압점3반 · 대면 정밀 첨삭 상담 — 8명 한정 모집

1:1 대면 정밀 첨삭 · 각 시간대 1명 · 선착순 예약제

구분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토요일 (저녁)	6~7시	7~8시	8~9시	9~10시
일요일 (오후)	2~3시	3~4시	4~5시	5~6시

총 8명 한정 모집 · 각 시간대 1명 (선착순 마감)

압점2반 (온라인) 운영 안내

신청 · 문의 : gift0508@naver.com

① 신청	gift0508@naver.com 으로 압점2반(온라인) 신청
② 문제	문제 전송
③ 답안 제출	답안 제출 및 질의사항 전송 (문제 전송 당일부터 다음날까지)
④ 결과 전송	정답해설지 · 채점매칭표 · 답안피드백 · 질의응답 전송 (답안 수신일로부터 2일 이내)